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성주생활체육시설을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운영성과를 극대화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시설현황

시 설 명	위 치	시 설 내 용
성주생활 체육시설	성주읍 성산리 1516번지 일원, 대황리 86-1번지 일원	테니스장 5면, 정구장 3면, 족구장2면(실내1면 포함), 게이트볼장 4면 관리사 2동, 그라운드골프장 1면, 파크골프장 1면

○ 위탁기간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(3년)

○ 위탁사무 :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

○ 사용료 징수 : 조례규정에 따르며, 징수된 사용료는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

○ 예산지원 : 2015년 기준 23,000천원 운영비 지원

4. 참고사항

○ 민간위탁 근거 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」 제24조
-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❍ 본 위탁 동의(안)은 성주생활체육시설의 위탁기한이 2015. 12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성주군 생활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❍ 주요 내용은

- 성주읍 성산리 1516 및 대황리 86-1번지 일원의 성주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 5면, 정구장 3면, 족구장 2면, 게이트볼장 4면, 관리사 2동, 그라운드골프장 1면, 파크골프장 1면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❍ 검토결과 관련법과 조례에 부합되므로 성주생활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(안)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